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25 선고 2023가단551622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

담당변호사 이한무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4. 3. 28.

판 결 선 고 2024. 4. 25.

주 문

1.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으로부터 6/49 지분, 원고 B, C로부터 각 4/49 지분에 관하여 2022. 8. 10.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A과 피고는 수숙(嫂叔)관계이고, 원고 B, C는 원고 A의 자녀들로서 피고와 숙질(叔姪)관계이다.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의 형인 소외 E은 2012. 11. 16. 사망하였다.

나. 망 E과 피고의 부(父)인 F은 2018. 1. 4. 사망하였고, 망 F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은 배우자 소외 G(3/7지분), 원고 A(6/49지분), 원고 B, C(각 4/49지분), 피고 D(2/7지분)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.

다. 한편 소외 G은 2020. 2. 4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부분인 3/7지분을 증여하였고, 2020. 2. 5. 이 사건 부동산 중 3/7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제1956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라. 원고들은 2020. 12. 31.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53295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2022. 8. 10. 피고가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그 가액으로 보상하여 주고 이를 취득하는 공유물분할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, 원고 A은 84,238,801원, 원고 B, C는 각 56,159,2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,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/49지분에 관하여, 원고 B, C는 위 부동산 중 각 4/49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위 판결을 '공유물분할 판결'이라 한다).

마. 공유물분할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해 가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받고 있다.

바. 원고들은 2022. 9. 19. 및 2023. 12. 12. 피고에게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,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살피건대,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(제28조), 제29조에서 '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'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관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,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,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관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60708 판결 등 참조).

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으로부터 6/49 지분, 원고 B, C로부터 각 4/49 지분에 관하여 2022. 8. 10.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(현재 등기명의를 원고들에게 남아있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세 등을 부과받고 있는 것 자체가 원고들의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아무런 손해 내지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백상빈

별지